

예산총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81,978,918	188,459,368
일반회계	5,473,990,734	164,219,722
특별회계	807,988,184	24,239,646
공기업특별회계	366,492,160	10,994,765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66,492,160	10,994,765
기타특별회계	441,496,024	13,244,881
대학운영특별회계	9,699,731	290,992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0,039,082	901,172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3,000,000	90,000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83,200	2,496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397,654,186	11,929,62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19,825	30,59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2015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2014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040,53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4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